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2952
----------	-------

발의연월일 : 2019. 10. 22.

발의자 : 윤관석 · 안호영 · 김철민
박재호 · 김정우 · 신동근
윤호중 · 박홍근 · 이후삼
조용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도시 등에 대한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수립되었으나, 광역교통시설의 설치 지연 등으로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이 늦어짐에 따라 신도시에 최초 입주한 주민의 교통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추가적인 광역교통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상황임.

또한 현행법은 대도시권 인구 집중에 따른 광역교통 혼잡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복잡하고 파급효과가 큰 광역교통업무의 특성상 광역교통 현황조사, 수요예측, 자료의 분석 및 관리 등을 수행하는 전문적인 정책지원 조직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현저하게 지연된 지역을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하고, 광역교통특별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광역교통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

출연기관 및 공공기관 등을 광역교통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지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광역교통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6부터 제7조의9까지, 제9조의10 신설 등).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6부터 제7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6(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의 현저한 자연 등으로 인하여 교통 불편이 큰 지역에 대하여 직접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이하 “특별대책지구”라 한다)로 지정 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특별대책지구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대책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하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대책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7(특별대책지구의 지정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대책이 충분히 이행되어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목적이 달성된 경우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그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의8(광역교통특별대책의 수립·시행)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7조의6에 따라 지정된 특별대책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역교통특별대책(이하 “특별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해당 특별대책지구의 광역교통 현황 및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수요의 예측
2. 특별대책지구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 상황
3. 특별대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4. 노선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의 확충
5. 버스전용차로,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수단의 원활한 운행에 필요 한 대중교통시설의 확충 및 개선
6. 특별대책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계획
7. 그 밖에 특별대책지구의 광역교통 개선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대책을 수립하거나 수립된

특별대책을 변경하는 경우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특별대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된 특별대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특별대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방법과 특별대책의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9(광역교통특별대책의 재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7조의8제1항제6호에 따른 특별대책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와 협의를 거쳐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과 관련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제5호”를 “제2항제6호”로 한다.

4. 제7조의6부터 제7조의9까지에 따른 특별대책지구 및 특별대책에 관한 사항

제9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10(광역교통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광역교통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② 광역교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광역교통현황 조사 및 광역교통수요의 예측

2. 광역교통 통계자료의 분석 및 관리

3. 광역교통정책의 연구 및 자문

4. 광역교통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5. 광역교통에 대한 교육 및 홍보

6. 주요국 광역교통의 제도·정책 동향 조사 및 분석

7. 광역교통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의 지원

8. 그 밖에 광역교통 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지원센터의 업무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3항에 따라 지원 받은 예산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u>제7조의6(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의 현저한 자연 등으로 인하여 교통 불편이 큰 지역에 대하여 직접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광역 교통 특별 대책 지구(이하 “특별대책지구”라 한다)로 지정 할 수 있다.</u></p> <p><u>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특별대책지구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u></p> <p><u>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대책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하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u>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대책</u></p>

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7조의7(특별대책지구의 지정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대책이 충분히 이행되어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목적이 달성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그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조의8(광역교통특별대책의 수립·시행)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7조의6에 따라 지정된 특별대책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역교통특별대책(이하 “특별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해당 특별대책지구의 광역교통 현황 및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수요의 예측
 2. 특별대책지구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 상황
 3. 특별대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4. 노선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의 확충
 5. 버스전용차로,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수단의 원활한 운행에 필요한 대중교통시설의 확충 및 개선
 6. 특별대책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계획
 7. 그 밖에 특별대책지구의 광역교통 개선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대책을 수립하거나 수립된 특별대책을 변경하는 경우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특별대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된 특별대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특별대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방법과 특별대책의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7조의9(광역교통특별대책의 재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7조의8제1항제6호에 따른 특별대책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와 협의를 거쳐 제7조 및 제7조의 2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제8조(대도시권 광역 교통위원회
설치 등) ① (생략)
② 광역교통위원회의 소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신설>

4. ~ 6. (생략)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제5호에 따라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심의·조정·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이행과 관련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8조(대도시권 광역 교통위원회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7조의6부터 제7조의9까지
에 따른 특별대책지구 및 특별대책에 관한 사항

5. ~ 7. (현행 제4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③ -----
----- 제2항 제6호-----

-----.

제9조의10(광역 교통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광역교통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② 광역교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광역교통현황 조사 및 광역 교통수요의 예측
 2. 광역교통 통계자료의 분석 및 관리
 3. 광역교통정책의 연구 및 자문
 4. 광역교통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5. 광역교통에 대한 교육 및 홍보
 6. 주요국 광역교통의 제도·정책 동향 조사 및 분석
 7. 광역교통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의 지원
 8. 그 밖에 광역교통 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 지원센터의 업무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3항에 따라 지원 받은 예산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